

## 보도자료

2025. 6. 18.(수) 12:00 배포 2025. 6. 18.(수) 07:30 보도시점 (2025. 6. 19.(목) 조간)

#### "개인정보, **'**혁시지워 원스톱 서비스'로 아저하게 처리해요

-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사전적·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 현장 지원
- 작년 9월부터 개인정보처리 현장 애로사항 26건 해소, 향후 지원 확대·강화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고충 해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4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24년 9월~12월 월평균 2.2건 ⇒ '25년 1~5월 월평균 3.4건 (55% 증가)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워팀'" 으로 운영된다.

\* 평상시에는 소속 부서에 근무하다가 필요시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매트릭스' 조직 으로, 법 제도, AI(인공지능),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진행 절차>



-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 허용 (30일 내외)
- 사전적정성 :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 (60일 내외)
- •개인정보 안심구역 :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능
- 법령적극해석 :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 (1~3개월)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 다만,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됨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민간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중에서도 중소 기업 비중이 높았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펌도 고객들에게 보다 확실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웨스톱 서비스 신청기관 유형>

민간 22건 (85%)	공공 4건 (15%)
중소기업(12), 대기업(6), 해외기업(2), 로펌(2)	중앙부처(3), 산하기관(1)

산업계 관계자는 "민간 컨설팅은 고비용, 불확실성, 장기간 소요 등 부담이 커접근이 어려웠는데, 개인정보위가 무료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5일 이내 개인정보처리 지원을 해 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기업 참여-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창 신청 절차 참조

원스톱 서비스는 접수 후 **평균 3일** 이내에 **처리**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실태확인·사후이행점검 필요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추가지원절차(사전적정성1건, 법령적극해석2건)를 진행하였다.

\* 총 26건 중 ▲신속 답변 23건(88%), ▲추가지원 3건(12%)

신청 사안 유형은 AI(인공지능) 관련 건이 절반 이상(14건, 54%)으로, 주요쟁점은 ▲개인정보 해당 여부, ▲CCTV(시시티브이) 영상 처리, ▲동의의 적법 여부, ▲웹스크래핑 가능 여부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쟁점과 맞물려 있다.

### <원스톱 서비스 주요 요청사항 및 지원사례 발췌·요약>

주요 요청사항	지원 내용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 등)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안내 방식 문의 * 향후, 유사생성정보들이 자주 변경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방침 등을 자주 개정해야 함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 다만, 향후 유사한 종류의 생성정보들을 계속 추가로 안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 및 필요시 범주화('전자서명에 필요한 생성정보' 등)하는 방안을 안내하여 상품출시 지원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정보주체 필수동의 팝업창 개설 허용 요청 * 현재, 필수동의는 민감·고유식별정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해외 현장결제의 경우 결제(승인)정보 등의 국외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국외이전 요건 확보를 위한 필수동의 팝업창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동 서비스 오픈 지원 * 필수동의 금지의 예외 사유로 허용		
열감지동작분석(실신, 전도, 몰키촬영 등)을 통한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자동 신고지원 AI(인공지능)앱 도입 방안 *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비상벨을 누르거나, 경찰 등으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공중화장실법)	카메라가 아닌 센서 수치만으로 특정 동작을 인식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개인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경찰·소방 등)이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운영 가능함을 안내하여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외부CCTV(시시티브이) 영상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방안(지자체 영상 공유 금지 등) 준수 필요		
실종자 수색 CCTV(시시티브이)검색 AI(인공지능)앱 도입 방안(지자체 협업 방안 포함) * 실종아동법상 CCTV(시시티브이)영상 처리근거는 경찰·지자체에 있음	영상 처리가 필요한 AI(인공지능)앱의 <b>안전한 활용 방안</b> ( <b>안면인식정보 제외</b> , <b>인상착의 등만</b> 활용) 및 지자체와의 적법한 <b>위탁 절차 및 방식</b> 등 안내 * CCTV(시시티브이) AI(인공지능) 검색은 필요·최소한의 분량·범위 내에서만 가능		
정보주체의 전자서명(로그인)절차를 대행하여 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 화면을 AI(인공지능) 웹스크래핑· 분석 서비스 추진 방안 *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등록을 통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 방식 활용 필요 여부	민감정보 전송 간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방식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API(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 활용 안내* (법상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는 등 절차 안내 포함)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협의, 최근 보도자료(5.19.) 발표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들은 <sup>①</sup>1주일 이내의 **빠른 답변**, <sup>②</sup>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의 **명확한 구분**, <sup>③</sup>비공개 업무처리(사업 아이템, 영업비밀 등 보호), <sup>④</sup>빠른 상황 공유\* 등을 서비스의 장점으로 들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후 다른 기업에 추천하여 해당 기업이 실제 이용토록 한사례\*\*도 있다.

- \* A스타트업 대표는 빠른 답변과 1일 1회 이상의 전화통화(진행상황 공유 및 상담)를 통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심리적 부담감 완화 등에 대해 만족감 표현
- \*\* B기업 담당자는 원활한 절차 진행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한 후 B기업의 계열사(B')에 원스톱 절차를 소개하여 동 계열사(B')도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담당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늘리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인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소중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익 (02-2100-3045)





# 참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안내창



<홈페이지: www.pipc.go.kr / 대표메일: onestoppipc@korea.kr / 대표전화: 02-2100-3045>